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항공훈련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산림재난분야 교육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전환하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4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2023년 2월 24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3”을 “2”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교수 담당) “2”를 “3”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228”을 “229”로 하고, 일반직 계 “228”을 “229”로 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228”을 “229”로 하고, 일반직 계 “228”을 “229”로 하
며,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중 “2023년 2월 24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한시정원)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구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2월 24일까지</u>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 다. ② (생 략)	제27조(한시정원) ①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산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u>3</u>	<u>2</u>	-1
·	·	·	
·	·	·	
전문경력관 가군(교수 담당)	<u>2</u>	<u>3</u>	+1

[별표 6]

산립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28</u>	<u>229</u>	+1
일반직 계	<u>228</u>	<u>229</u>	+1
·	·	·	
·	·	·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u>2</u>	<u>3</u>	+1
·	·	·	
·	·	·	

[별표 6의2]

산립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28</u>	<u>229</u>	+1
일반직 계	<u>228</u>	<u>229</u>	+1
·	·	·	
·	·	·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u>2</u>	<u>3</u>	+1
·	·	·	
·	·	·	